

폐기물국가간이동법령 개정시행('21.4.1)에 따른 안내자료

<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관련 >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개정·시행('21.4.1)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이 강화 되는데, 주요 바뀌는 내용은?

→ 폐기물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만 수출 가능하고, 수입은 폐기물 취급자만 가능함.(일반 무역업체는 폐기물 수출입이 불가능)

종류	현행	시행예정 법률 제5조의2 (2021.4.1~)
폐기물 수출자격	<u>폐기물취급자</u>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지방자치단체·공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 <u>폐기물배출자</u>	<u>폐기물취급자</u>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수탁자) ·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u>사업장폐기물배출자</u>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폐기물 수입자격	<u>폐기물취급자</u> + <u>폐기물취급자에게 위탁하려는 일반인</u>	<u>폐기물취급자</u>

→ 다만, 폐지를 수입하는 제지업자는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수출입자 자격 추가 위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3월 국회 통과예정)이며, 법 개정과 함께 관련 고시 제정 예정

1-1. 폐기물취급자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관계없이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폐기물 처리능력이 있는 폐기물취급자에게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이 있으므로, 폐기물 취급자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해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2. 수출입자 자격 강화 시행('21.4.1) 이전에 수출입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수출입 신고를 신청한 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법 시행일 이전에 신청된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개정된 수출입자 자격은 4월1일부터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3. 폐기물 수출입 포괄 허가 또는 신고 건은 어떻게 되는지?

→ 법 시행일 이전에 포괄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포괄 허가·신고가 기수리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 다만, 포괄 허가 또는 신고의 기한은 12개월의 범위내에서 검토하되, '22.3.3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할 것임

4. 일반 무역업체는 폐기물을 수출입 할 수 없는 것인지?

→ 개정된 법에 따른 수출입자 자격요건은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등으로 규정, 일반 무역업체가 수출입자 자격(폐기물 취급자, 수출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포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입이 불가함.

→ 다만, 수출입자 자격 변화에 일선 업계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전에는 포괄 허가 또는 신고를 요청한 것에 대해 법적 기한(12개월의 범위내)에 따라 검토(3번 참조)

* (포괄수출입 허가·신고) 동일 폐기물을 1년 범위에서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같은 자로부터 두 번 이상 수입할 때는 한꺼번에 허가·신고가능

5. 법인등록번호가 동일(사업자등록번호는 상이)한 본사와 지사(분점)로 구성된 기업체에서 지사(분점)만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 본사도 폐기물 취급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등에 한해 폐기물취급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사는 폐기물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음

< 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 전산처리 관련 >

1. 수출입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작성 대상은 누구인지?

→ 폐기물의 수입자, 수출자, 운반하는 자, 재활용·처분하는 자는 「폐기물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여야 함.

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전산처리가 의무화 되었으며 인계·인수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구분	대 상	현행 (~2021.3.31.)		개 정 후(2021.4.1.~)	
		입력시기*	입력내 용	입력시기*	입력내 용
수입	수입자	운반·인계일	폐기물 종류, 양 등	운반·인계일	폐기물 종류, 양, 인계일, 운반차량번호
	운반자	인수일	수입자명, 운반차량번호, 인수량 등	인수일	수입자명, 운반차량번호, 인수량, 인수일, 인계량, 인계일
	처리자 (재활용, 처분자)	인수일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	인수일	인수일자, 인수량, 계량값
		처리일	처리량, 처리일자 등	처리일	처리량, 처리일자
수출	수출자	-	-	운반·인계일	폐기물 종류, 양, 인계일, 운반차량번호
				선적완료일 (선박)	선적일, 선박번호, 선사명, 선적량, 선하증권(B/L), 수입국
				하역완료일 (선박)	하역항, 하역일자
				통관완료일 (수입국)	통관량, 통관일자
	운반자	-	-	인수일	수출자명, 운반차량번호, 인수량, 인수일

* 수출입 과정 중 해당 입력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작성

**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3. 변경된 인계·인수 입력내용은 언제부터 입력하여야 하는지?

→ 허가신고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21.4.1.이후 폐기물의 수입·수출이 시작될 경우 개정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여야 함.

< 폐기물 수출입 보증 관련 >

1. 폐기물 수출입 보증금 예탁기관은 어디로 지정된 것인지?

→ 보증금 예탁기관은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이 있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증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있음. 환경부 홈페이지에 지정기관을 게시할 예정임.

2. 폐기물 수출입 보증 관련 주요 확인 사항은 무엇인지?

→ 폐기물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관, 예탁방법 등 확인

1)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구분	내용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국내 처리단가 + 해상 운송단가] ×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양 × 1.5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처리단가 또는 해상 운송단가 중 큰 값] ×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양 × 1.5

※ 해상 운송단가는 전년도 항로별 평균 운송단가로 하며, 평균 운송단가 자료는 별도 안내 예정

2) 보증기간

구분	요건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국내 통관일을 보증·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려는 폐기물의 국내 하역일을 보증·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할 것

3) 보증금의 예탁방법

보증금은 현금납부의 방법으로 예탁하되, 환경부장관이 보증금을 수령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 위탁기관이 보증금 전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해상 운송단가표 산정방법

가. 해양수산부 통합 포트미스에 공표된 '운임 및 요금'을 근거로 산정

- 유효자료 : 발효일 기준 전년도 1월1일 ~ 12월31일

나. 산정시기

- 매년 12월 17일 ~ 12월 26일 당해연도 '운임 및 요금'을 토대로 차기년도 해상 운송단가를 산정

다. 해상 운송단가는 연간 운임 및 요금을 합한 금액의 합계의 평균값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

1) 포트미스에 공표된 13개 기준항로별로 산정하고 운임과 요금의 모든 항목을 포함

-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통합 포트미스에 공표된 다음의 항목을 모든 운임과 요금으로 함

*운임 - 해상운임(O/F)

*요금 -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저유황할증료(LSS), 긴급유류할증료(EBS), 터미널 컨테이너 조작수수료(O/THC, D/THC),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화물인도지시서 요금(D/O Fee), 부두 사용료(Wharfage), 컨테이너 봉인료(Seal Charge), 기타

2) 수출과 수입에 적용되는 해상 운송단가를 각각 산정

3) 산출 입력값은 다음과 같이 함.

컨테이너 소유(선사 소유), 품목(일반화물), 운송단위(TEU), 컨테이너 크기(20ft), 컨테이너 종류(dry), 환적여부(n)

4) 환율은 국내은행(하나은행을 우선한다.)의 전년도 평균 환율(최종고시분,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전년도 평균 환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해상 운송단가를 산정하는 당일의 기준 환율로 적용한다.

5) 1) ~ 4)에 따라 산정된 TEU 당 해상 운송단가(원/TEU)는 톤당 해상 운송단가(원/톤)로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100원 단위 반올림)

해상 운송단가(원/톤) = 해상운송단가(원/TEU) × (1 TEU / 21.7 톤)

*20피트 일반컨테이너(1TEU) = 21.7톤 적용

- 6) 수출의 해상 운송단가로 산정된 평균 해상 운송단가는 수입폐기물에 적용하고, 수입의 해상 운송단가로 산정된 평균 해상 운송단가는 수출 폐기물에 적용한다.

*수출폐기물의 반입명령 시 국외 항구 → 국내 항구로 운송해야 하므로 수입 해상운송비가 적용됨

라. 전년도 운임 및 요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과거자료(2년전 또는 3년전)를 사용하여 '나'와 같이 산정한다.

2. 해상 운송단가의 적용

- 해상 운송단가는 수출입폐기물 보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해당 운송구간의 해상 운송단가는 국외 적용 항구만을 기준으로 기준항로의 해상 운송단가를 적용한다.

*기준항로별 적용 항구는 통합 포트미스의 공표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 해상 운송단가표에 해당 운송구간의 해상 운송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항로의 반대구간 해상 운송단가를 적용한다.

* 해당항로의 '수입폐기물' 항목이 없는 경우 '수출폐기물' 항목의 단가로 적용

- 해당 운송구간이 해상 운송단가표 상 수입폐기물, 수출폐기물 항목에 모두 없거나 적용 항구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운송항로 등을 고려하여 가장 인접한 적용 항구에 해당하는 기준항로의 해상 운송단가를 적용한다.

3. 2021년도 해상 운송단가표

(단위 : 원/톤)

기준항로	수입폐기물	수출폐기물	적용 항구
북미 항로	240,000	35,000	LONGBEACH, SEATTLE 등
중남미 항로	207,000	29,000	SAN ANTONIO, GUAYAQUIL 등
구주 항로	124,000	122,000	HAMBURG, DUNKERQUE 등
지중해 항로	140,000	98,000	PORT SAID, ODESSA 등
중동 항로	73,000	-	JEBEL ALI, SHARJAH 등
호주 항로	114,000	-	BRISBANE, MELBOURNE 등
동남아 항로	38,000	-	LAEM CHABANG, SURABAYA 등
한일 항로	42,000	36,000	MAIZURU, OSAKA 등
한중 항로	27,000	-	FUZHOU, XIAMEN 등
한러 항로	64,000	62,000	KORSAKOV, VLADIVOSTOK 등
서남아 항로	83,000	-	BANGALORE, COLOMBO 등
아프리카 항로	133,000	-	MOMBASA, APAPA 등
남태평양 항로	-	-	-

*비고. 기준항로별 적용 항구 목록은 별첨 참조

[별첨] 기준항로별 적용 항구 목록

대상 항로	적용 항구
북미항로 (71)	HOBOKEN, NEW YORK, NJ / LONGBEACH / NORFOLK, NE / SEATTLE / SAVANNAH, NY / VANCOUVER / BALTIMORE / BOSTON, MA / CHARLESTON, SC / HOUSTON, TX / LOSANGELES / MIAMI, FL / MOBILE / NEWORLEANS / NEWYORK / OAKLAND, CA / NORFOLK, VA / SAVANNAH, GA / TACOMA / SANPEDRO / CALGARY / EDMONTON / HALIFAX / MONTREAL / SASKATOON / TORONTO / ATLANTA / NASHVILLE, TN / BUFFALO, NY / CHICAGO / CLEVELAND, OH / CHARLOTTE, NC / COLUMBUS, OH / CINCINNATI / DALLAS-FORT WORTH,TX / DENVER, CO / DETROIT, MI / HONOLULU / KANSASCITY, KS / LAREDO / LOUISVILLE, KY / MEMPHIS / MARION, NC / OMAHA / PORTLAND, OR / SANANTONIO / SALTLAKECITY / SAINTLOUIS / SANTATERESA / TAMPA / NORTH, SC / PRINCE RUPERT / CARROLL, IA / CLINTON, MI / FRAZER / FORT WORTH / GRANDRAPIDS, MI / GREENSBORO-HIGHPOINTAPT / INDIANAPOLIS / JACKSONVILLE, FL / NEWARK, DE / WORCESTER / PHILADELPHIA / PITTSBURGH / RICHMOND, VA / WALTHAM / PHOENIX / SANDIEGO / WILMINGTON, NC / PORT PERRY / KANSASCITY, MO
중남미항로 (67)	SAN ANTONIO / GUAYAQUIL / MANZANILLO / LIRQUEN / BUENAVENTURA / ENSENADA / LAZARO CARDENAS / CALLAO / BUENOS AIRES / SANTOS / VALPARAISO / PHILIPSBURG / ORANJESTAD / FREEPORT / ST GEORGES / IQUIQUE / MEJILLONES / SAN VICENTE / ARICA / BARRANQUILLA / CARTAGENA / SANTA MARTA / CALDERA / CAUCEDO / RIO HAINA / CHIPPING CAMPDEN / CHARLESTOWN / PUERTO QUETZAL / GEORGETOWN / PUERTO CORTES / PORT-AU-PRINCE / KINGSTON / BASSETERRE, SAINT KITTS / GEORGETOWN, GRANDCAYMAN / CASTRIES / CORINTO / WILLEMSTAD / BALBOA / COLON FREE ZONE / PAITA / PARAMARIBO / ACAJUTLA / GRAND TURK ISLAND / PROVIDENCIALES / POINT LISAS / BRIDGETOWN / ROSEAU / GUARANAO BAY / GUANTA / LA GUAIRA / MARACAIBO / PUERTO CABELLO / CHARLOTTE AMALIE, SAINT THOMAS / CHRISTIANSTED, SAINT CROIX / MONTEVIDEO / NAVEGANTES / PARANAGUA / RIO GRANDE / ITAPOA / ROSARIO / ITAJAI / ITAGUAI / CRISTOBAL / PANAMA / CORONEL / PORTO DE ITAGUAI / ANTOFAGASTA
구주항로 (15)	HAMBURG / DUNKERQUE / LE HAVRE / SOUTHAMPTON / ROTTERDAM / GEBZE / KUMPORT / ANTWERPEN / GDANSK / MELNIK / BREMERHAVEN / AARHUS / GOTEBORG / FELIXSTOWE / AHUS

대상 항로	적용 항구
지중해항로 (45)	PORT SAID / ODESSA / CONSTANTA / ISTANBUL / BARCELONA / VALENCIA / GENOVA / FOS-SUR-MER / GERMIGNAGA / BEIRUT / MARSAXLOKK / KOPER / AMBARLI / VENEZIA / IZMIT, KOCAELI / LATAKIA / PORT SAID EAST / TRIESTE / TEKIRDAG / PIRAEUS / RIJEKA / HAIFA / GIOIA TAURO / SINES / YARIMCA, KOCAELI / ALGECIRAS / VIGO / DAMIETTA / ASHDOD / LA SPEZIA / TANGIER / ALIAGA, IZMIR / MERSIN, ICEL / EVYAP / DURRES (DURAZZO) / VARNA / LIMASSOL / EL ISKANDARIYA (ALEXANDRIA) / POTI / THESSALONIKI / NAPOLI / RAVENNA / NOVOROSIYSK / ANTALYA / GEMLIK, BURSA
중동항로 (14)	JEBEL ALI / KHOR AL FAKKAN / SHARJAH / SOHAR / ABU DHABI / BAHRAIN / DAMMAN / JEDDAH / SOKHNA PORT / AQABA (EL AKABA) / HAMAD / AD DAMMAM / DUBAI / JUBAIL
호주항로 (22)	BRISBANE / MELBOURNE / SYDNEY / AUCKLAND / LYTTTELTON / NAPIER / TAURANGA / TOWNSVILLE / PAGO PAGO / LAUTOKA / TARAWA / MAJURO / NOUMEA / TIMARU / PAPEETE / LAE / Motukea Island / RABAU / NUKU'ALOFA / SANTO / PORT VILA / APIA
동남아항로 (67)	PASIR GUDANG, JOHOR / PORTKELANG / LAEM CHABANG / JAKARTA, JAVA / SURABAYA / KOTA KINABALU, SABAH / BINTULU, SARAWAK / PENANG (GEORGETOWN) / SINGAPORE / HO CHI MINH CITY / HAIPHONG / XINSHA / BANGKOK / TAIWAN PRO.OF CHINA / MANILA / DA NANG / VIETNAM, OTHER-PORT/ / SUVA / KOSRAE (EX KUSAIE) / POHNPEI (EX PONAPE) / CHUUK (EX TRUK) / YAP / GUAM / SAIPAN / PORT MORESBY / KOROR / EBEYE / VICTORIA / TOAMASINA / BEIRA / NACALA / MAPUTO / REUNION / MUTSAMUDU / GAOMING PT / HAIKOU / NANHAI PT / SHATING / SHIJINGJIAOXIN / SHUNDE PT / XINHUI PT / ZHUHAI PT / BELAWAN, SUMATRA / MERAK, JAVA / SEMARANG / YANGON / TANJUNG PELEPAS / LAT KRABANG / BEIHAI / GUANGZHOU / FOSHAN / HUADU PT / HUMEN PT / LANSHI / SANSHAN PT / SANSHUI / XINFENG / XIAOLAN / SIHANOUKVILLE / MACAU / VUNG TAU / CHU LAI / KAMPONG SAOM / WESTPORT,PORT KLANG / MANILA NORTH HARBOUR / MANILA SOUTH HARBOUR / HO CHI MINH, VICT
한일항로 (67)	MAIZURU / HIBIKINADA, FUKUOKA / HAKATA,FUKUOKA / MOJI,KITAKYUSHU / YOKOHAMA / OSAKA / HOSOSHIMA / NIIGATA / KANAZAWA / MIZUSHIMA / NAHA, OKINAWA / NAGOYA,AICHI / OITA / SHIBUSHI / SHIMIZU / TOMAKOMAI / TOYAMASHINKO / TOKYO / KOBE / YOKKAICHI / KOZA / TOKUYAMA / CHIBA / FUKUYAMA,HIROSHIMA / HIROSHIMA / AKITA / HACHINOHE / IMABARI / IMARI / ISHIKARI / IYOMISHIMA / KUMAMOTO / MURORAN / MATSUYAMA / NAOETSU / NAGASAKI / ONAHAMA / SENDAI / MIYAGI / SAKATA / SAKAIMINATO / TAKAMATSU / TOYOHASHI / TOKUSHIMA / YATSUSHIRO / SHIMONOSEKI / FUSHIKI / HITACHINAKA / HAMADA / KAMAISHI / KUSHIRO / KAWASAKI / MISHIMA, KAWANOE / NIIGATAHIGASHI / SENDAISHIOGAMA / TOBATA, FUKUOKA / HAKODATE / SATSUMASENDAI / TSURUGA / ISHIKARIWAN-SHINKO, HOKKAIDO / IWAKUNI / KOCH / OTAKE / WAKAYAMA / NAKANOSEKI / UBE / MIIKE, FUKUOKA / KASHIMA, IBARAKI

대상 항로	적용 항구
한중항로 (56)	FUZHOU / HUANGPU PT / XIAMEN / TIANJIN XINGANG PT / TIANJIN / WEIHAI / NINGBO / SHANGHAI / QINGDAO / YANTAI / LIANYUNGANG / DALIAN / CHONGQING / DALIANXINGANG / NINGBO PT / WUHAN / RUGAO PT / DALIAN PT / JINGTANG(TANGSHAN) / WEIFANG PT / WEIHAI PT / DANDONG PT / XINGANG / TAICANG / ZHANGJIAGANG / HONG KONG / YANTIAN PT / ZHENGZHOU / CHANGSHU PT / CHANGSHA / FUQING / MAWEI PT / NANTONG PT / WEITOU / WENZHOU / DEFENG / NANJING / SHEKOU PT / RIZHAO PT / KEELUNG(CHILUNG) / KAOHSIUNG / TAIPEI / TAICHUNG / NANSHA PT / YINGKOU PT / SHIDAO PT / RONGCHENG / LONG YAN / LONGYAN PT / WEIFANG / QINHUANGDAO PT / JIANGMEN PT / LELIU / RONGQI PT / SHANTOU / ZHONGSHAN PT
한러항로 (3)	KORSAKOV / VLADIVOSTOK / VOSTOCHNYY PORT
서남아항로 (24)	BANGALORE / CHENNAI (EX MADRAS) / JAWAHARLAL NEHRU (NHAVA SHEVA) / COLOMBO / KARACHI / MUNDRA / PIPAVAV (VICTOR) PORT / HAZIRA / KOLKATA (EX CALCUTTA) / COCHIN / ENNORE / HALDIA / MANGALORE / KRISHNAPATNAM / MARMUGAO (MARMAGAO) / TUTICORIN / VISAKHAPATNAM / MALE / CHITTAGONG / NHAVE / MUHAMMAD BIN QASIM/KARACHI / MUMBAI (EX BOMBAY) / INDIA KATTUPALLI / VIZAGAPATANAM
아프리카 항로 (34)	MOMBASA / APAPA / DAR ES SALAAM / DURBAN / MATADI / ABIDJAN / SAN-PEDRO / DOUALA / ONNE / FREETOWN / BERBERA / CAPE TOWN / KRIBI / PORT LOUIS / TINCAN,LAGOS / PORT ELIZABETH / COTONOU / MINDELO / LIBREVILLE / TEMA / TAKORADI / BANJUL / CONAKRY / BATA / MALABO / MONROVIA / NOUAKCHOTT / WALVIS BAY / DAKAR / MOGADISHU / ZANZIBAR / EAST LONDON / LOME / LAGOS
남태평양 항로	-

[참고] 환율기준표

국제통화명	대한민국(KRW)	비 고
1달러 (미국)	1,180.11 원	
1엔 (일본)	11.05 원	
1위안(중국)	170.93 원	
1달러(대만)	40.06 원	
1달러(홍콩)	152.15 원	
1링깃(말레이시아)	280.75 원	
1달러(싱가포르)	855.18 원	
1동(베트남)	0.051 원	
1루피(인도)	15.92 원	
1바트(태국)	37.71 원	
1페소(필리핀)	23.78 원	
1루피아(인도네시아)	0.082 원	
1루피(스리랑카)	6.37 원	
1루블(러시아)	16.41 원	
1리알(오만)	3,065.85 원	
1헤알(브라질)	231.21 원	
1파운드(영국)	1,513.45 원	
1유로(유럽)	1,346.21 원	
1디르함(모르코)	122.01 원	‘21.03.03 기준
1디르함(아랍에미리트)	321.28 원	
1리알(카타르)	323.86 원	
1디나르(바레인)	3,128.74 원	
1리알(사우디아라비아)	314.49 원	
1달러(오스트레일리아)	813.84 원	
1프랑(CFP)	11.27 원	‘21.03.03 기준
1달러(뉴질랜드)	766.81 원	
1바투(바누아투)	10.40 원	‘21.03.03 기준
1탈라(사모아)	447.90 원	‘21.03.03 기준
1달라(솔로몬제도)	140.49 원	‘21.03.03 기준
1통가(파양가)	487.96 원	‘21.03.03 기준
1키나(파푸아뉴기니)	319.52 원	‘21.03.03 기준
1달러(피지)	539.03 원	우리은행 기준
1타카(방글라데시)	13.91 원	
1루피(파키스탄)	7.29 원	
1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	72.03 원	
1에스쿠보(카보베르데)	12.32 원	‘21.03.03 기준

* 2020년 평균 환율 최종고시분 매매기준율_하나은행/ 일부 없는 내용은 타 은행 /은행
권 과거 자료 없는 경우 산정 당일 환율 고려